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0,167,405	10,805,022
일반회계	337,143,594	10,114,308
특별회계	23,023,811	690,714
기타특별회계	23,023,811	690,71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96,393	29,892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6,623	2,89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615,454	228,464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242,424	127,273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47,035	16,41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03,643	24,109
항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37,892	4,137
상수도특별회계	4,512,583	135,377
수질개선특별회계	88,746	2,66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915,218	117,457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27,800	834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40,000	1,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65,18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